

2022) 건축관계법규(전3권) 2차 정오표 [2022.4.25]

■ 1권 건축법해설

1-26 페이지

【참고】 “건축”행위와 건축허가 등

1. “건축” 행위(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)로 정의된 것은 「건축법」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임
2. 기둥·보·지붕틀·벽 중 세부분 이상 해체는 개축으로 보아 “건축”행위에 해당됨 (대수선 부분 참조)
3. “재축”의 경우 규모제한을 다음과 같이 함
 - ①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일 것
 - ② 동(棟)수,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
 - 동수,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동수, 층수 및 높이가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

1-28 페이지

【1】 대수선의 범위

부 위	내 용	비 고
1. 내력벽	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 30㎡ 이상 수선·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증설·해체의 경우 면적, 개수 제한 없음 ■ <u>4부분 중 3부분 이상 해체</u> 시 개축행위로 봄
2. 기둥	증설·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·변경	
3. 보	증설·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·변경	
4. 지붕틀 (한옥의 경우 서까래 제외)	증설·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·변경	
5. 방화벽, 방화구획의 바닥·벽	일부라도 증설·해체하거나 수선·변경	면적 제한 없음
6. 계단 ¹⁾	일부라도 증설·해체하거나 수선·변경	면적 제한 없음
7.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	가구 및 세대간의 경계벽을 증설·해체하거나 수선·변경	-
8.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²⁾	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 30㎡ 이상 수선 또는 변경	-

* 1) 주계단·피난계단·특별피난계단을 말함

2)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말함

【2】 상세 예

수선·변경 내용	행 위
1. 기둥 3개	대수선
2. 보1개+기둥2개	일반수선(대수선 아님)
3. 지붕틀 2개+보2개	일반수선(대수선 아님)
4. 지붕틀 3개	대수선
5. 보1개+지붕틀1개+기둥1개	<u>개축(해체의 경우)</u>
6. 내력벽+기둥1개+보1개	<u>개축(해체의 경우)</u>

* 위 1, 2, 3, 4의 경우 증설·해체시 개수에 관계없이 대수선으로 봄

2022) 건축관계법규(전3권) 1차 정오표 [2022.4.6]

■ 3권 건축법령집

해당 페이지	해당 위치	법	오	정
1-94	② 내용 수정	법	② 1-97쪽	② 1-98쪽
1-95	⑪, ⑫~⑭ 내용 수정	법	⑪ 1-97쪽 ⑫~⑭ 1-98쪽	⑪ 1-98쪽 ⑫~⑭ 1-99쪽
1-98	제25조 ① 내용 수정	법	① 1-92쪽	① 1-93쪽
1-126	제49조 ②, ③ 내용 수정	법	② 1-135쪽 ③ 1-143쪽	② 1-136쪽 ③ 1-144쪽
1-136	제49조 ① 내용 수정	법	① 1-125쪽	① 1-126쪽
1-144	제49조 ①, ② 내용 수정	법	① 1-125쪽 ② 1-135쪽	① 1-126쪽 ② 1-136쪽